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수 석전문위원

####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## 3. 제안이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'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·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'의 만료기간을 연장(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준용)하고,
  - ※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 연장 권고(산업통상자원부)
-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구분 기준인 '계약금액'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기준 '계약금액'과 매입기준 '총계약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'을 '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'으로 동일하게 표기(안 제7조제1항의 별표1 제4호)
-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매입감면기간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66조 제3항을 준용하여 연장(안 제8조의 별표2 제2호타목)
  - '15. 12. 31. ⇒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66조제3항 준용
- 개정조례안 시행 전('16.1.1.이후)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(부칙안 제2조)

#### 5. 검토의견

-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, 공급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주요 수입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임
- 정부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·등록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규정을 동 조례안 포함하는 등 총 4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있음
  - ※ '감면 규정(기간 연장)'의 조례반영 현황
    - ① 2009.11월(~2012.12.31.까지) ② 2013.5월(~2014.12.31.까지)
    - ③ 2015. 5월(~2015.12.31.까지)
    - ④ 2016. 5월(지방세특례제한법 준용/~2018.12.31.까지)
-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7조제1항의 별표1 제4호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이되는 "계약금액"의 정의를 "총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"으로 통일시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
  - 안 제8조의 별표2 제2호 타목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여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·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의 만료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
  - 부칙안 제2조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동 조례안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토록 개정한 것으로 법리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2015년도 기준 하이브리드 자동차 채권감면에 따른 채권매입 감소액은 1,516백만원으로, 기금수입의 주요 수입원인 공채판매액 155,215백만원의 차지비율이 1%로 미미하지만, 채면감면 제도 시행이후 전년도말까지 매출감소액은 총 74억원으로 추계됨. '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'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·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본 취지에 맞게, 감면기간 종료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#### < 참고자료 >

#### 1. 2015년도 기금 수입현황

(단위: 천원)

계	공채판매액	융자금 이자수입	융자금 원금회수	전년도 이월액	기타수입
336,262,942	155,215,870	22,926,260	70,707,800	86,275,039	1,137,973
(100%)	(46.2%)	(6.8%)	(21.0%)	(25.7%)	(0.3%)

#### 2. 201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현황

(단위 : 천원)

계	자동치	- 등록	각종 계약체결	기타 허가	
	신규등록	이전등록	기 수당 계약세설	및 신고	
155,215,870 (100%)	90,578,690 (58.4%)	12,655,200 (8.2%)	37,040,910 (23.9%)	14,941,070 (9.6%)	

#### 3. 하이브리드 자동차 채권감면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계	2010년도	2011년도	2012년도	2013년도	2014년도	2015년도
등록대수	4,951대	686대	580대	750대	859대	1,065대	1,011대
매출감소액	7,426,500	1,029,000	870,000	1,125,000	1,288,500	1,597,500	1,516,500

# 4. 타시도 하이브리드차량 지역개발채권 감면 현황

구 분	채권종류	감 면 내 용	감면 한도액
서울특별시	도시철도채권	도시철도법 시행령 준용	200만원
부산광역시	도시철도채권	도시철도법 시행령 준용	200만원
대구광역시	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	2016.12.31.일까지 모든 자동차 등록에 대한 매입 면제	-
인천광역시	지역개발채권	2월 단체장발의로 조례 개정	150만원
광주광역시	지역개발채권	3월 단체장발의로 조례 개정	150만원
대전광역시	지역개발채권	'15년 2월, 지방세특례제한법 준용토록 기 개정함	150만원
울산광역시	지역개발채권	조례에 감면 기한 명시 안함	150만원
세종시	지역개발채권	조례에 감면 기한 명시 안함	150만원
경기도	지역개발채권	'15년 1월, 지방세특례제한법 준용토록 기 개정함	150만원
강원도	지역개발채권	조례 개정 추진 중	150만원
충청남도	지역개발채권	2월 단체장발의로 조례 개정	150만원
전라북도	지역개발채권	'15년 1월, 지방세특례제한법 준용토록 기 개정함	150만원
전라남도	지역개발채권	'15년 1월, 지방세특례제한법 준용토록 기 개정함	150만원
경상북도	지역개발채권	조례에 감면 기한 명시 안함	150만원
경상남도	지역개발채권	3월 단체장발의로 조례 개정	150만원
제주도	지역개발채권	3월 단체장발의로 조례 개정	150만원